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2나7024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2나7024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28 선고 2021가단536361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C

변론종결 2024. 3. 22.

판결선고 2024. 4. 19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28. 선고 2021가단5363610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2. 제1심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. 8. 9.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C는 제1심피고 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. 8. 9. 접수 제126160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,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8면 2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꾼다.

『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한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(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), 갑제9,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제1심피고 B이 2010. 5. 12. E에게 7억 원을 지급한 사실, E는 2019. 3. 20. 매도인 K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임대보증금채무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6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E가 제1심피고 B으로부터 위 7억 원을 받은 후 약 9년이 경과한 2019. 3. 20.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피고 B이 E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

사정만으로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, ② 제1심피고 B과 E가 부부 사이이기는 하나, E가 제1심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, ③ 제1심피고 B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, 제1심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려 하였다거나 이를 담보로 F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, ④ E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, 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은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고, 물상보증인을 채무자와 같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로 보기 위해서는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물상보증인 E가 제1심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』

○ 제1심판결 8면 마지막 행부터 9면 1행까지의 “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10지분의 가액은”을 “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”으로 변경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성수, 판사 임은하, 판사 김용두